

공

고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048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8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587)

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(박경일),
②주식회사엔에스비나우이엔씨(김남수)

나. 전화번호 : ①02-3700-7900 ②02-458-2646

2. 명칭 : 발파진동 및 기반암 손상 제어를 목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/활용한 다단평행 천공 발파공법(NEW. SUPEX Blasting Method)

3. 신기술의 내용

<분야>

토목 > 터널 > 터널 굴착(발파)

<기술의 요지>

이 신청기술은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의 고유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·활용하여 고안한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, 터널 혹은 수직구 발파 시 일반적으로 최대 진동이 발생하는 심발부 단공과 장공으로 다단 평행 천공하여 암반 구속도를 감소시킨 후 심발 및 확대영역 일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고 다단 장약하여 지발당 장약량 축소 및 단계별 2자유면 확장 발파로 진동제어가 가능한 공법이다. 또한 최외곽부에 전자뇌관을 선택적 적용하여 진동저감 외 기반암 손상영역 축소 및 여굴 제어가 가능한 공법으로 전자뇌관 적용에 따른 기술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자뇌관 사용량은 최소화시킨 발파공법이다.

<범위>

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·활용한 발파공법으로 심발영역을 단공과 장공으로 구분하여 천공하고 다단장약한 후 심발 및 확대영역 일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수준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이며, 활용 목적에 따라 최 외곽부에 전자뇌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진동 저감효과 외 기반암 손상영역 축소 및 여굴제어가 가능한 발파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